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버스 이용자 모바일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 (계약금액) ①유지관리 용역은 해당 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道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②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필요 시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최신을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의무 수행에 있어 모든 합당한 기술과 근면한 자세로 항시 “발주기관”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공급사”(주식회사 코어시스템즈)가 체결한 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른다. 단,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다.**

제4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전,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과업 참여인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당해 인원을 조속히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비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 발생 즉시 대응 조치 및 장애 발생 보고** 하고, 시스템 복구 완료 직후에는 장애시간, 사유,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 **장애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시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 교체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때 교체인원의 기술자 등급은 당초 인력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도중, “발주기관”에서 과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요청 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및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오류가 발견될 시 ” 계약상대자 “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업계획의 집행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 청구 등 지방계약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자료 등 “발주기관”에서 관리 중인 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협의 및 의견수렴 등) ①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①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
- ②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③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 ④ 부주의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업지시 사항에 부적절한 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 ⑥ 기타 과업수행 상 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7조 (특허권의 사용)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 부담 등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검사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경우,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용역 일부의 이행완료에 대한 기성 검사요청은

최소 30일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검사) “발주기관”은 제8조에 따른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기관”에 검사 완료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내 대상 시스템을 정상 가동 시키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시간을 곱한 금액을 대금 지급 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때 지체상금의 부과는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초 4시간 이후부터 적용하며,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제12조 (지체상금 면제) 위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용역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 때,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 항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② 붕괴, 폭발, 화재방 사고·환경오염 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 ③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 ④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타 업체와 계약 체결시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의무)의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계약기간 중 각 분기(3개월) 내 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 다. 계약기간 중 시스템 장애로 4시간 이내 정정상가동 불가한 상황이 3회 이상 발생 시
 - 라.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가 자격상실 또는 부도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효력은 송달된 날로부터 발생된다.

제15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발주기관”과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법규와 통상적 관례에 의한다.

2023. . .

발 주 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